

의안번호	제 394 호
의 결 연 월 일	2007년 7월 일 (제 282 회)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09년 7월 2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394
----------	-----

제출연월일 : 2009년 7월 2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긴급한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 대처와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를 위한 충청북도통합방위예규활용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충청북도 지역 내 통합방위 상황 재해재난발생 시 협의회 운영과 임무수행은 충청북도통합방위예규에 의함.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 생략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에 따른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및 충청북도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협의회”를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인”을 각각 “명”으로, “사고가 있을”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충청도내 통합방위상황 또는 재해재난 발생시 협의회 운영 및 업무의 처리절차는 충청북도지사, 제37보병사단장, 충북지방경찰청장이 공동으로 협약한 충청북도통합방위예규에 의한다.

제4조제1항 중 “지원본부”를 “충청북도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로 한다.

제5조 각 호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통합방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 5조, 제 9조 및 제 17조의 규정 에 의하여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충청북도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에 따른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및 충청북도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p>
<p>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 5조 제 3항 제 5호에서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 비라 함 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취약지역 대비책 2. 통제구역 설정 3.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p>〈삭 제〉</p>
<p>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협의회의 의 장과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 상 40인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 이 <u>사고가 있을</u>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p> <p>②~③ <생략></p> <p><신설></p>	<p>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충청북도통 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 장과 부의장 각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이 상 4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u>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u>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충북도내 통합방위상황 또는 재해재난 발생 시 협의회의운영 및 업무의 처리 절차는 충청북도지사, 제37보병사단장, 충북지방경찰청장이 공동으로 협약한 충청북도통합방위예규에 의한다.</p>
<p>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충청북 도지사 소속하에 <u>지원본부를 둔다.</u></p> <p>②~⑥ <생략></p>	<p>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충청북 도지사 소속하에 <u>충청북도통합방위지원본 부(이하"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u></p> <p>②~⑥ <현행과 같음></p>

<p>제5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 유지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 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 봉사 활동의 실시</p> <p>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병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 하는 시간에 한한다) 라.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 문화시설 등의 구조물</p> <p>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p>	<p>제5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통합방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취약 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 유지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 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 봉사 활동의 실시</p> <p>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병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 하는 시간에 한한다) 라.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 문화시설 등의 구조물</p> <p>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p>
---	--

관계 법령 발췌

□ 통합방위법

제5조(지역통합방위협의회)

- ④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제28호)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통합방위대책)

-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9조·제17조2항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단위 통합방위대책을 수립·시행한다.